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전번호 제2014 - 43 - 150호(사건번호 : 201407조사011)

안 건 명 (주)네오피플의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주)네오피플(대표 김보성)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99길 12, 역삼동모노타워

의결연월일 2014. 9.24

주 문

1. 피심인은 휴대폰 결제취소 가능기간을 고지하지 않는 행위 및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초기 접속할 때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 창으로 4일간 공표하도록 한다. 이때, 세부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www.pruna.com) 공표 문안 >

제목	(주)네오피플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내용	저희 회사((주)네오피플)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14.1월부터 5월까지 휴대폰으로 결제했더라도,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결제한 월(月)중에는 언제든지 결제취소가 가능한데도 이를 회원에게 고지하지 않은 행위, 월 자동결제 상품 1주일 정액권을 무료로 준다는 명목으로 신규 회원가입을 유도한 후 회원동의 없이 월 자동결제 상품에 동시에 가입시킨 행위가 각각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14년 월 일 (주)네오피플 대표이사 ○○○

3. 피심인은 휴대폰으로 결제한 이용자가 콘텐츠 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결제취소 가능기간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하고, 결제를 할 때에도 이용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를 서비스 상품에 가입시킬 때에는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하되, 구체적인 업무처리 개선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계획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피심인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 액 : 3,09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1. 일반현황

-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인터넷 웹사이트(www.pruna.com)를 통해 온라인 콘텐츠 공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사실조사 결과

- '14. 1월부터 5월까지 휴대폰으로 결제한 회원 3,866명에게 결제한 월(月) 중에는 언제든지 결제취소가 가능한데도 이를 회원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회원가입 화면에 “신규 회원가입 전원 해피플러스 1주일 정액권 및 무료 1,000포인트 즉시지급!”이라고 알리고 있으나, '14. 1월부터 5월까지 이를 보고 신규 회원으로 가입한 22,844명에게 “해피플러스 유선+무선”월 자동결제 상품을 7일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서 회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동 상품에 무단 가입시킨 사실을 확인하였고,
 - 동의없이 가입한 22,844명 중 755명이 1번 이상 결제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휴대폰으로 결제한 경우 결제한 월(月) 중에는 언제든지 결제취소가 가능한데도 이를 회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제5호 - 나목 - 제4호에 해당되며,
- 신규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 “해피플러스 유선+무선” 월 자동결제 상품을 7일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서 회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동 상품에 무단 가입시킨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제5호 - 나목 - 제1호에 해당된다.

— <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규정 > —

-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 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 <별표4: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
- 나. 이용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와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1)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2) 전기통신서비스의 추가적인 이용에 대하여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3) 법령이나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4)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는 행위
 - 5)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4. 시정조치 명령

가. 금지행위의 중지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폰 결제취소 가능기간을 고지하지 않는 행위 및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한다.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초기 접속할 때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 창으로 4일간 공표하도록 한다. 이때, 세부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www.pruna.com) 공표 문안 >

제목	(주)네오피플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내용	저희 회사((주)네오피플)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14.1월부터 5월까지 휴대폰으로 결제했더라도,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결제한 월(月)중에는 언제든지 결제취소가 가능한데도 이를 회원에게 고지하지 않은 행위, 월 자동결제 상품 1주일 정액권을 무료로 준다는 명목으로 신규 회원가입을 유도한 후 회원동의 없이 월 자동결제 상품에 동시에 가입시킨 행위가 각각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14년 월 일 (주)네오피플 대표이사 ○○○

다.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폰으로 결제한 이용자가 콘텐츠 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결제취소 가능기간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하고, 결제를 할 때에도 이용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를 서비스 상품에 가입시킬 때에는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하되, 구체적인 업무처리 개선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라.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정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부과상한액 및 부과기준금액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심인의 과징금 부과상한액 및 부과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

< 부과상한액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의 행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98호)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심인의 과징금 부과상한액은 8억원이다.

< 부과기준금액 >

위반의 고의성, 피해의 정도 및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성의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부과기준 금액을 3억원 이하로 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의 부과기준금액은 매출액 3,518백만원의 0.1%인 351만원이다.

나. 과징금의 결정

이상의 부과기준금액에 대해 위반기간, 조사거부 또는 방해, 증거 인멸 조작, 위반행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중 또는 감경사유를 적용한다.

피심인의 위반기간이 2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이므로 부과기준금액에 10%를 가산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하여 부과기준금액에 10%를 가산한 금액에서 20%를 감경한다.

이에 따라 피심인의 최종 과징금은 309만원으로 결정한다.

6.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7. 결론

상기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4. 9.24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위 원 장

최 성 준



부위원장

허 원 제



위 원

김 재 홍



위 원

이 기 주



위 원

고 삼 석

